

전기 Q&A



■ 지락차단장치시설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41조

Q. 판단기준 제41조 (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)에 대한 질의.

현재 공공사업인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440V, 11kW 이하의 전동기 및 30A 이하의 부하에 대해서 지락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작은 부하의 지락으로 인한 정전으로 냉난방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공공의 목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에 준하는 장소로 간주하여 지락차단장치 설치 제외 장소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.

A.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 제2항을 보면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에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동조 제4항에 비상용 조명장치 · 비상용승강기 · 유도등 · 철도용 신호장치 등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정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동 판단기준 제41조에서 '발전소 · 변전소 ·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'이라 함은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제3조의 용어 정의와 같으며, '변전소 및 개폐소에 준하는 곳'이라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말합니다.

따라서 문의하신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은 동 규정에 따라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KEA